

TRADE & ORIGIN REPORT



미국 CBP 결정사례로 본 품목분류사전심사 (Advance Ruling)의 중요성





미국 CBP 결정사례로 본 품목분류사전심사 (Advance Ruling)의 중요성



김성채
PwC 관세법인 HS 연구원장

1. 미국 CBP의 HS 품목분류 심사

우리나라 관세청은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HS 협약에 의한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하여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제3조의 규정에 기반한 것으로 대부분의 WTO 및 WCO 회원국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국경 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또한 우리나라 관세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사전심사(advance ruling) 및 기타 법적 결정을 내린다.

- 사전심사는 국제 무역 커뮤니티에 CBP가 향후의 수입 또는 운송거래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 예를 들어 결정서(ruling letter)는 상품의 관세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관세 등 모든 비용 부과, 반입의 제한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결정서를 통하여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미국 수입시 어떻게 취급될지는 바탕으로 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CBP는 그밖에도 현재 진행중인 수입 및 운송거래에 대한 내부조언(internal advice)이나 CBP의 결정건에 대한 항소 검토(protest review)에 따른 기존사례 변경 등의 법적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CBP는 CROSS(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라 불리는 이미 결정된 사전심사 데이터에 대한 검색시스템, 공고, 연방통지, CBP 지침 및 핸드북 등 다양한 정보공개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cbp.gov/trade/rulings>]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시행된 여러 무역정책, 특히 상호관세 및 수입조정 조치들은 국제무역질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갑작스럽게 부과된 높은 관세 자체도 문제이지만 수출 시장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예측불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HS 품목분류를 포함한 사전심사제도는 이러한 예측불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보탬이 된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외 품목분류 결정사례와 미국 CBP의 품목분류 ruling 상이사례를 몇 가지 제시함으로써 관련된 업종의 향후 대미 수출비즈니스 계획 수립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최근의 국내외 품목분류 결정과 미국 CBP의 HS Ruling

HS 품목분류표의 중요한 요건 또는 성격을 뜻하는 표현 중 하나로 일물일호(一物一號)의 원칙¹⁾이 있다. 하나의 물품은 한 개의 품목번호에만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품에 따라서는 HS 품목분류의 어느 두 개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물품들이 쉽고 명료하게 동일한 하나의 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부나 류의 주, 예를 들어 각 부나 류 주의 제외규정, 제84류 주 제2호, 제17부 주 제4호, 제97류 주 제5호 등), 제2호 및 제3호 등이다.

1) 보통 일물일처(一物一處)라는 표현을 더 흔하게 사용하나 HS 품목분류에 맞도록 변형한 문헌(오수교, 『FTA·관세·무역실무자 및 수험생을 위한 관세율표』, 세인북스, 2013, p15)상의 표현을 인용하였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도구(품목분류표)를 근거로 분류한다면 어떤 경우여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나 품목분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결과가 항상 같을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외의 공식적인 품목분류 결과와 미국 CBP의 견해가 다른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서빙로봇과 배달로봇

2023년 9월, 제72차 WCO(세계관세기구) HS 위원회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2가지 종류의 로봇에 대한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HS 위원회에서 논의된 물품은 아래와 같다.

① 실내용 서빙 로봇 	•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신하여 홀 서빙을 해주는 로봇으로 vision 센서와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모터구동식 바퀴가 달린 베이스에 3~4단의 음식 트레이와 터치작동식의 디스플레이가 결합되어 있음(중량 50kg, 이동속도 0.8 m/s) • 주방에서부터 요리사가 음식을 트레이에 얹어두면 본 기기는 손님이 있는 식탁까지 중간중간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해가면서 이송식당 내에서 이동하면서 식당이나 건물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외사용은 부적합함.
② 실외용 배달 로봇 	• 근거리 실외 배달서비스용 로봇으로 카페, 식당, 편의점에서 음식이나 음료의 배달을 위해 사용. 목적지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주행하거나 리모콘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할 있음. (적재량 15kg, 최대 이동속도 12km/h) • 주행중 보행자도로, 횡단보도 등으로 이동하면서 장애물 등을 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음.

HS 위원회 논의과정이나 쟁점은 다소 복잡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HS 위원회는 이 두 가지 물품을 모두 제8428.90호(적하·양하용의 기계)에 분류하였고, 시장에서 통상 '로봇'으로 불리는 다양한 기계와 관련한 미래의 HS 품목분류표 개정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미국 CBP는 이들 물품이 HS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중 유사한 물품들에 대하여 HS 결정과는 달리 서빙로봇은 제8479호(기타의 기계류)에, 배달로봇은 제8704호(화물 자동차)에 각각 분류하였다.

결정번호	N335128 (23.9.18)	HQ H329911(23.6.7)
분류결과	8479.89.9599	8704.60.00
제목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serving robot from South Korea	Classification of Meal and Product Delivery Robots
내용	The subject product is the H***** S1 Robot, which you describe as an autonomous traveling serving robot. It is comprised of two sections: a lower driving module and an upper application module. The driving module includes the controller, motor, battery, and 2D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sensor. (중략) We note that the subject robot is designed and programmed to function solely in a non-industrial, food service environment. (생략)	The subject merchandise consists of meal and product delivery robots from Colombia known as “Kiwi*****.” You state that the robots are “aimed at universities, cities, and companies in general,” and that they “circulate safely along the sidewalks to deliver meals and products through customers using an API. (중략) You request tha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classify the subject robots under heading 8709, HTSUS, which provides for “Works trucks, self-propelled, not fitted with lifting or handling equipment... (중략) We find that the subject robots squarely meet the terms of heading 8704, HTSUS, as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First, the robots are “motor vehicles” in that each robot incorporates electric hub motors to self-propel (i.e., the robots are motorized) and can carry goods (i.e., the robots are vehicles) by road (even if only “occasionally”). Second, the robots are designed to transport goods in a plastic container for delivery to customers. (생략)

HS 위원회는 미국의 Ruling 이후 이들 물품을 모두 제8428.90호에 분류하였고, 2024.6월 WCO 총회에서 이 품목들에 대한 분류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²⁾ 등재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미국 CBP는 현재까지 자국의 Ruling에 대한 별도의 재검토나 변경(Revocation)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2) 품목분류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는 HS 협약 제7조에 따라 협약의 일관된 적용을 위하여 HS 품목분류표를 보조하는 분류지침서의 하나로 WCO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조간행물의 하나이다. HS 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분류 사례는 회원국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대부분 품목분류의견서에 등재되고 이는 특정물품에 대한 WCO의 공식적인 품목분류 권고이자 통일적인 품목분류 기준으로 제공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관세청 고시로 수용하고 있다.



현재의 HS 분류체계로 보자면 미국의 품목분류 결정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글쓰이는 생각한다. 다만, HS 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총회의 승인까지 얻은 건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책임있는 HS 협약 회원국의 자세일 것이다.

미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TSUS)상으로 제8428.90호는 관세 0%가 적용되는 반면, 제8479.89.9599호와 제8704.60.00호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³⁾.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들 물품에 대한 새로운 Ruling을 신청하거나 HS 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한 기존 Ruling의 재검토 요청 등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플라스틱제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floor mat)

앞서 일물일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를 언급한 바 있다. 통칙 제3호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가목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어느 호의 용어가 가장 구체적(most specific)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통칙 제3호 해설서는 “만약 특정 물품의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좀 더 분명히 표현하고(more clearly identifies) 있는 경우 그 품명은 그 물품을 좀 더 불완전하게 표시(identification is less complete)하고 있는 품명보다 더욱 구체적이다.”라고 해설하면서 자동차용의 바닥깔개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1) 자동차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는 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위 해설과 관련, 우리나라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은 플라스틱제의 자동차용 바닥깔개를 재질에 따라 제3926호(기타의 플라스틱 제품)로 분류하고 있다.

3) 미국의 상호관세나 품목별 수입조정과는 무관한 HTSU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 2025 Rev. 30(2025년 11월) 상의 Rates of Duty 1(General)에 명시된 세율을 말하며, 이하 이 글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세율은 HTSUS 상의 관세율을 의미한다.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38(2024.7.12)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CAR MAT B(PE FLAT TYPE HOOK ATTACHED CARMAT) PE-F-HK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노출표면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인조 가죽(표면 엠보싱 처리, 뒷면 방직용섬유로 보강), 중간은 입체감을 주는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용 편물이 적층된 특정형상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 보조매트 • 용도 : 인테리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 바닥 보조매트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차량의 바닥 인테리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고객이 별도로 구입하여 바닥에 추가로 놓고 사용하는 보조 매트로 제87류 차량의 기능과 구성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39류에서 제외되지 않고, - 바닥 깔개는 재질에 따라 방직용섬유로 만든 것은 제57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은 제4016.91호등으로 분류하므로, 바닥 깔개의 특성(두꺼움, 단단함, 강도)을 갖춘 본건 물품도 재질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함 (생략)



본 결정사유에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에서 언급한 통칙 제3호 해설서도 어느 정도 논리적인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수출입 물품의 HS 품목분류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의결 기구라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물품은 그 결정에 따라 수입신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글쓴이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결정은 통칙 제3호 가목 해석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바닥 깔개의 경우 재질에 따라 경합하는 호가 달라지며 각 호의 용어마다 그 구체성이 다르다. 즉, 재질에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용 바닥 깔개가 통칙 제3호 가목 해설서의 예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자동차 바닥 깔개'의 경우 제5703호와 제8708호가 경합할 것인데 제5703호의 용어(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터프트(tuft)한 것])가 제8708호의 용어(제8701호부터 제8705호 차량용의 부속품)보다 대상물품을 더 분명히 설명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차량용 부속품은 종류(class) 또는 카테고리(category)를 함의하는 표현인 반면, 양탄자나 바닥 깔개는 비교적 특정한 품명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바닥 깔개'나 '가황고무제의 자동차 바닥 깔개'의 경우 이들



물품을 두고 제8708호와 경합한 만한 호인 제3926호(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와 제4016호(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의 용어가 제8708호의 용어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8708호의 '자동차의 부속품(accessory)'이라는 표현이 제3926호나 제4016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제품(article)'이라는 표현보다 명백히 제한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판단된다.

굳이 따지자면 'accessory'나 'article' 모두 특정의 품명보다 종류 또는 카테고리를 함의하는 표현이겠으나 HS 품목분류표에서 'accessory'는 통상 부속품만을 의미하지만, 'article'은 품목분류표상 거의 모든 물품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자동차용 바닥깔개의 경우 그 재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접근의 품목분류가 가능하다고 본다⁴⁾.

구분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가황고무제 바닥깔개	터프트한(tufted)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경합세번	제3926호 vs 제8708호	제4016호 vs 제8708호	제5703호 vs 제8708호
품목분류	제8708호	제4016호	제5703호
분류근거	통칙 제3호 가목 (협약의 표현)	통칙 제1호 (제17부 주 제1호의 제외규정)	통칙 제3호 가목 (협약의 표현)

우리나라 분류 견해와 달리 미국 CBP는 플라스틱제의 자동차용 바닥깔개를 제8708호(자동차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해 오고 있다.

참조번호	NY N345998 (25.3.12)	NY N307817(19.12.6)
결정세번	8708.29.5160	8708.99.8180
제목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automotive floor mat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vehicle floor mats from China
물품설명	The article under consideration is a set of four polyvinyl chloride (PVC) automobile floor mats (Part Number JD888YY-BE1-3P-2#ML), which is designed to fit the contours of an automobile's interior floor surface.	The item under consideration has been identified as a 4Count Vehicle Floor Mat Set. You state in your request that the 4 CountVehicle Floor Mat Set sells as one unit containing four mats; two for the

4) 이 접근방식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타 HS 회원국에서 이와 같은 공식적인 Ruling 사례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물품설명	The mats provide comprehensive coverage for the front and rear floor areas. The primary purpose of these mats is to protect the car's flooring from dirt, moisture, and wear. They are also intended to enhance the overall interior appearance of vehicles. The applicable subheading for the set of four PVC automobile floor mats will be 8708.29.516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which provides fo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including cabs): Other: Other: Other." The general rate of duty will be 2.5% ad valorem. (생략)	rear floor board and two for the front floor board of a vehicle. The mats are constructed of PVC vinyl. (중략) The applicable subheading of the 4CountVehicle Floor Mat Set (SKU # 24227501) will be 8708.99.8180, (중략) 

CBP의 Ruling은 플라스틱제의 자동차용 바닥깔개를 일관되게 제8708호에 분류하고 있다. 다만, 6단위 소호 레벨에서 제8708.29호(차체의 기타 부분품)로 분류한 것과 제8708.99호(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가 모두 존재함에 주의해야 한다.

미국 HTSUS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플라스틱제 자동차 바닥깔개를 제8708.29.5160호(관세 2.5%)나 제8708.99.8180호(관세 2.5%)에 분류하는 것이 제3926.90호(관세 5.3%)에 비해 유리할 수는 있다. 다만,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될 경우의 품목관세가 문제(수입조정대상 여부인지의 문제)인데, 미국의 수입조정 조치와 관련된 최근의 포고문(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Proclamation 10908, '25.3.26'⁵⁾)상으로는 HTSUS 제8708.29.51호는 수입조정 대상인 반면, HTSUS 제8708.99.81호의 물품은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5) 이 포고문은 특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HTSUS 코드 기준 147개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조정 조치를 담고 있다. 지난 10월의 한미 무역협상결과에 따라 자동차 품목관세가 상호관세와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품목분류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향후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제거하는 차원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자동차용의 전자제어유닛(ECU, Electronic Control Unit)

ECU는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연료공급계통 등 다양한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핵심적인 장비로 자동차용 컴퓨터라고도 불린다. 현 시대의 자동차에는 차량의 모든 운행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많은 센서가 달려있으며 ECU는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와 연관된 각종 액추에이터를 제어함으로써 성능 및 연비 최적화, 안전 시스템 제어, 진단 및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CU의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기능은 자동차 주행시 엔진의 연료 분사량과 점화 시기를 조절하여 최적의 출력과 연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동차에는 하나의 ECU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ECU가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며 이들은 그 특화된 기능에 따라 엔진 제어 ECU(Engine Control Unit), 변속기 제어 ECU(Transmission Control Unit), 파워트레인 제어 모듈(Powertrain Control Unit)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또는 어떤 용도로 특화된 것이든 관계없이 이 계열의 물품은 자동차의 특정한 주행요건을 개선 및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센서로부터 입력신호를 받아 그 측정값에 따라 원하는 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액추에이터를 지속적으로 제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ECU는 현재에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되는 분야로 어느 한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는 품목분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CU 품목분류의 핵심 쟁점은 이러한 물품을 비전기적인 양을 제어하기 위한 자동조절용 기기(제9032호)로 볼 것인지 여부인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ECU 계열의 물품을 제9032호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60('13.4.29)
결정세번	9032.89-9090
품명	TCU(TRANSMISSION CONTROL UNIT)
물품설명	자동차 차량의 각 부분에 장치된 다양한 센서로부터 변속레버의 위치, ATF의 온도, 가속페달의 밟힘 정도, 외부도로 경사도, 운전자의 운전성향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 이를 제어 연산처리장치에서 처리하여 변속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변속을 수행·제어하기 위해 관련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함 (중략)
결정사유	• 관세율표제9032호의 용어에서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정기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제어기기 : (중략) 이들 요소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애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결정사유

- 또한제9032호에 분류될 수 있는 자동조절기는 (A) 측정장치, (B) 전기식조절장치, (C) 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됨을 설명.
- 상기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 “(2) 전기식조절장치도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각 부분 센서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입력받아 자동으로 유압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등을 제어하여 적절한 변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에 해당함 (생략)

ECU 계열의 물품에 대하여 CBP는 2007년 이전에는 대체로 제9032호(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에 분류하였으나 최근에는 제8537호(전기제어용·보드·패널)로 분류하는 추세가 이어져오고 있다. HTSUS상으로 제8537호에는 관세 2.7%, 제9032.89호에는 관세 1.7%가 각각 적용된다.

3. 시사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시작되었던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무역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인 올해 들어서만도 알루미늄, 철강, 구리제품 및 그 파생상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수입조정 조치로 해당 제품군의 관세율이 수시로 변동되어왔다.

한미 무역협상의 결과로 한국산 수출품인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가 25%에서 15%로 경감되어 상호관세율과 동일해진 현 시점에서 본다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CBP의 품목분류 결정이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각종 보호무역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단기적인 무역환경 변화나 국제 역학관계에 따라 개별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언제든지 요동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 CBP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관세정책 방향에 동의하는지와는 별개로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입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HS 변경에는 매우 엄격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업체 입장에선 미래의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HS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CBP의 사전심사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